

인천지방법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4타경565218 부동산강제경매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5. 11. 18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이상규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3.08.18. 근저당권		배당요구종기	2025. 1. 6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차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
조사된 임차내역없음									
<비고>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
비고란									
- 공부상 지목은 '답'으로, 현황은 경지정리된 '답'으로 이용중 - 현황상 다른필지와 구분없이 합필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벼를 수확한 것으로 보임 -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(미제출시 매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) -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4타경565218

[물건 1]

1.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인사리 1000-2
답 1099.3m²
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5.12.10	47,269,900	4,727,000
2회	2026.01.23	33,088,000	3,308,800
3회	2026.03.06	23,161,000	2,316,100
4회	2026.04.08	16,212,000	1,621,200

- 공부상 지목은 '답'으로, 현황은 경지정리된 '답'으로 이용중
- 현황상 다른필지와 구분없이 합필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벼를 수확한 것으로 보임
-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(미제출시 매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)
-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